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설 30310-551	(전화번호 731-6347)	전결 규정 4 조 1 항 국 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5. 10.		
보존연한	영구		
보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심사필
	시설계획과장	32	
	시설계획2계장	표홍	
기안책임자	박필용	85. 10.	10/24
경유 수신 참조	각안 참조 85.10.25		종 제
제 목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제1안	내부결재		
<p>1. 우리시 강서구 내발산동 18-11일대에 새마을중앙본부회장 전경환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바, '86, '88 올림픽대비 새마을정신, 문화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연구시설을 결정요청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p>			
<p>2. 본건은 우리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85.9.17)에서 심의 가결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 시행코자하며</p>			정서
<p>3.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협의조건에 부합되도록 조정한후 허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p>			관인
가.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서구 내발산동 18-11외 2필지 ○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40,030M² · 건축계획 : 2동 21,556M² 			
<p>정직 질서 창조</p> <p style="font-size: 2em;">04768</p>			

문화연구원 : 지하1층 지상7층 15,044M²

교육훈련관 : 지상5층 6,512M²

○ 요청자 : 새마을중앙본부회장

나. 관련사항

○ 현황

· 도시계획사항 : 생산녹지지역, 공항고도지구, 보존지구

· 주변여건 [안기부 송신시설로부터 200M - 300M

공항로 북측 400M 지점

상대농지(전)로서 공항 가시권임

○ 수도권정비 심의사항 (85.4.22)

· 구분 : 공공청사

· 규모 [대지 : 40,030M²

건물 : 1동(지하1, 지상5)및 부대시설 14,003M²

· 용도 : 정신문화시설

· 시행자 : 새마을중앙본부

· 조건 : (원안가결)

단, 개발유보. 고도제한지역으로 별도의 협의및 실시

계획 설계에서 김포가도의 경관배려와 기존의 수목과 식생을 존중할것.

다. 관계부서 의견

부서명	협의내용	조건사항
국방부	· 조건부동의	○ 건축물 위치 및 고도변경 금지
	· 건물	○ 건축물 완공시까지 행정관서 관계관배치
	[문화연구원 :	○ 건축물 건립지역의 지표면 해발고도를
	지하1, 지상7층	13.55-12M를 기준 산정하고 지표면의
	15,044M ²	해발고도가 상이 또는 변동 및 건축물
	L 교육훈련관 :	위치 변경시 재협의 할것.

-4769



	지상5층	
	6,512M ²	
국가안전기획부	* 조건부동의	○ 안전기획부 기지이전 이후에 건축을 하는 조건으로 동의
도시계획과	당해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임.	○ 수도권정비 심의 위원회 의결내용보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재심의 를 받아야함.
새마을지도과	동 의	—
건축지도과	-	○ 건물 최고높이는 해발 63M 이하로 되어 야됨 ○ 건축시는 사전 안전기획부, 국방부등 관계 부서와 협의 요망
농 축 과	-	○ 농지전용 협의를 요함.
첨부 : 1. 관계도면 2.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3. 관계부서 협의회신문 각 1부.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24년 11월 25일 제 12호 관공서 도시계획국 업무담당관 김민, 김민 </div>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1.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서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10. 26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연구시설	강서구 내발산동 18-11 일대	40,030	

* 도면 : 별첨 표시와 같음(생략)

제3안

수신 : 건설부장관

제목 : 같음

1.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4안

수신 : 총무처장관(시:공보관)

발신 : 시(국)장

제목 : 관(시)보 게재의뢰

1. 별첨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85.10.)의 내용을 관(시)보 게재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2(1)매

제5안

수신 : 강서구청장

제목 : 같음

1. 도정30314-4180(85.6.25)호와 관련임.

2. 위호로 요청한 귀구관내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계부서와 협의후 관계법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되었기 통보하니 도면



정리 및 관계과에 통보하고 조속 지적승인하여 도시계획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3. 본 도시계획결정은 부지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건축행위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협의내용 및 관계법 절차를 이행한후 사업시행 허가하기
 바람...

4. 관련부서 협의내용

< 제1안 이기시행 >

- 첨부 : 1. 관계부서 협의회신문 사본 6부
 2.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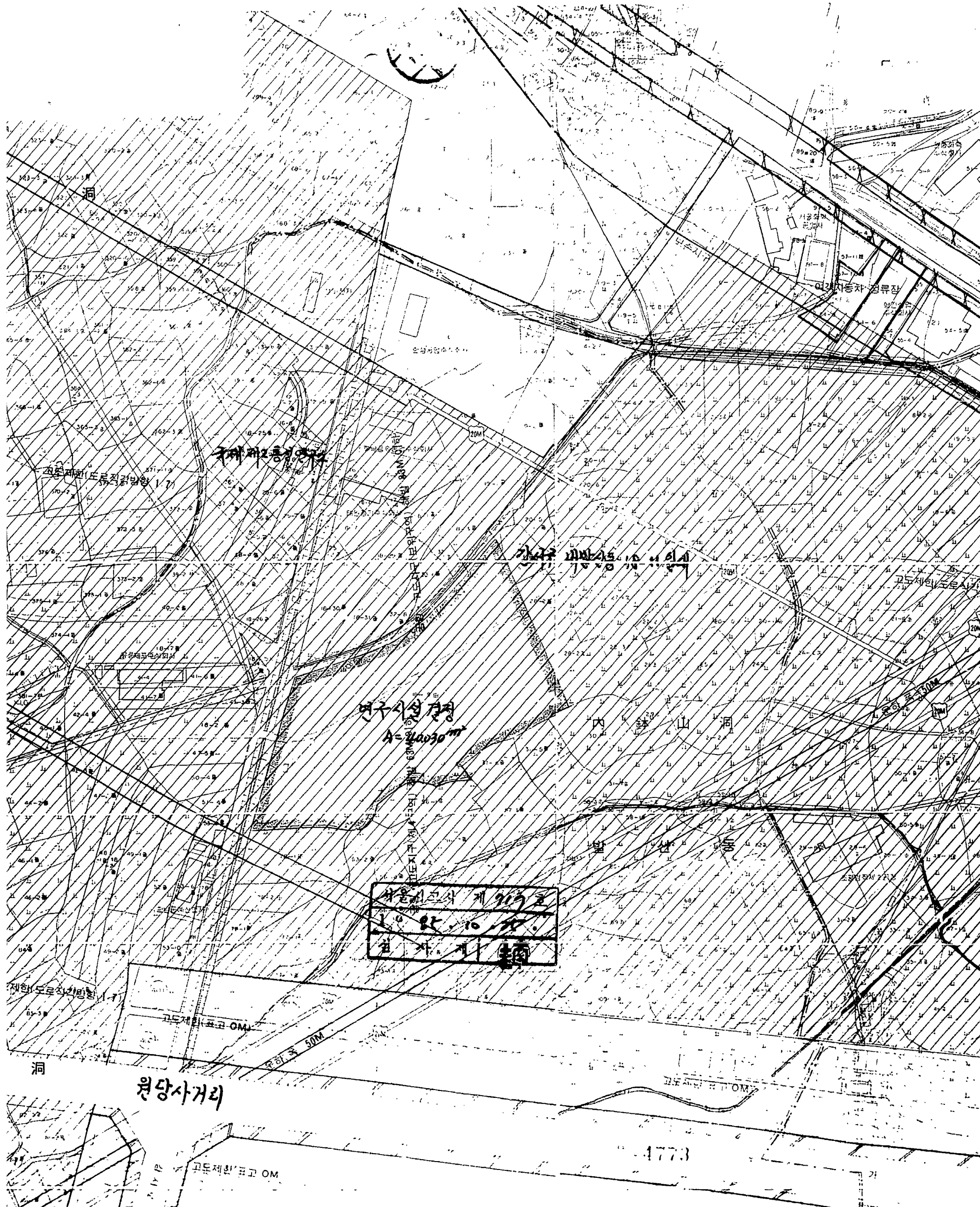
제6안

수신 : 도시계획과장

제목 : 같음

1. 우리시관내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끝.



구제 제2 통정경계

간사구 미반입된 노선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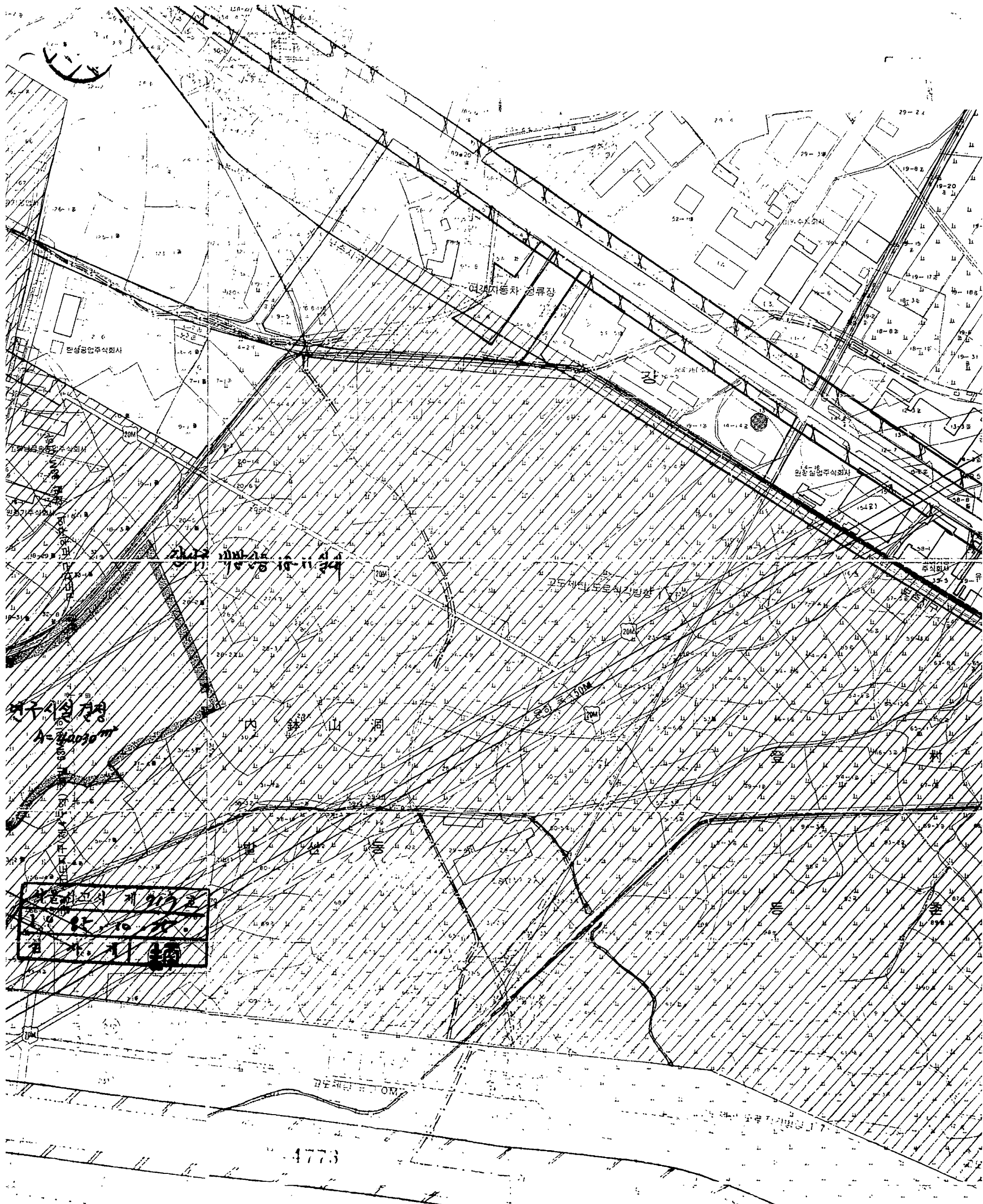
연구시설 경계

A=240030m²

서울특별시 제 919호
1985.10.10
경계기초

원당사거리

1773



여객자동차 경류장

한성공업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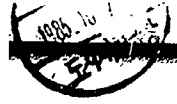
한성공업주식회사

연구시설 예정
A=210000m²

内 鉄 山 洞

고도제하 도로 설계 방향

한성공업주식회사
설계
1970.10.25



도시 계획 위원회 회의록

(소위원회)

계	가로계획 2계장	가로계획 1계장	시설계획 2계장	시설계획 1계장	시설계획 과장	공 람
Am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위원회

퇴 리 개 의 상 황

1 일 시 : 1993. 9. 17 16:00 - 17:30

2 장 소 : 도시계획국장실

3 상 의 안 건 : 울림리학교동 9개안 31건

4 참석위원 : 노충희 위원
여종구 " "
안철수 " "
이 등 " "
김계량 " "
김인식 " "
간 사 서기

5 불참위원 : 도철용 위원

6 기 타 참 석 : 재개발과장(최광수), 시설계획과장(서무전)

상임기획단 이종재, 가로계획1계장 이상진, 가로계획2계장 김영환,
시설계획1계장 조근호, 재개발계획계장 장성용, 울림기획단 토목담당관
토목1계장 김남훈.

제 21 안 도시계획시설 (학천) 결정 수정시설
 강동구 오금동 36, 강동구 오금동 296 - 흥남동 361-10

제 22 안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결정
 0 강서구 구갈산동 10-11업대(40,030m²)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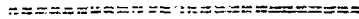
제 21 안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0 강동구 병달동 347-3외 1필지 가결

제 27 안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 설비) 변경 결정
 0 경기도 평주군 서부면 갈일리 산6 가결
 - 강남구 서초동 282

0 경기도 목천면 갈현리 - 강남구 서초동 282 가결

제 33 안 특장 구역 차적발사업 계획 결정 가결
 대지 : 42,392m² (36개지구)
 공용의 청사 : 945m² (3개소)
 도로 : 17,723m² (16개 가보)
 공공용지 : 103m² (1개소)
 공원 : 2,001m² (6개소)

의 의 진 행 상 황



간 : 안동부고

김인숙의원 : 특위에 합서 노동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일 : 10월 20일

위원장 노윤환 의원 : 이(가)를(을) : 지금부터 '65년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를 개회 하였습니다.

특별 심의를 단계를 보고 하십시오

제안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

0 을원대학교 및 관련시설 7건

수정가결

시설계획국장 제안설명 (심의안에 의함)

지난 본회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람기간중 국교남측 접속도로
폭원축소, 풍납중학교 방향으로 노선 10m이동, 상·하천복합 또는
제방 이용 및 풍납 토성구간 지하도 또는 육교로 통과 통로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본건이 주민의 이익 신청이 있어 소위원 회의에 심의토록 위임되었습니까?

시설계획국장 그 보나도 사안이 현장 확인등이 필요한 사안이긴 하므로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흥구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폭 30m도로가 강북에서 풍납동 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다가 이 지점부터
잠실로 교차지점까지는 폭52m의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폭 52m도로변에는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 있으며 강북역사부터 30m 도로로
연결 되었으므로 도로폭을 52m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 어떤 종류의 하천입니까?
 시설계획국장 존중하십니다.
 김재형위원 보수부분은 계획라고 나머지만 결정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철수위원 지일상 하천이 어떤지역은 개수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위 원 장 그렇다면 사실상 하천이 어떤 구간을 적외한 부분만 하천으로 결정
 소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일 등 동의 (수정가결)
 제5안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결정

0 강서구 내발산동 13-11일대

가결

시설계획국장 제안설명 (참의원에 의함)
 안발산위원 누구토지입니까?
 시설계획국장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산하조직소유토지입니다.
 위 원 장 연구시설로 결정되면 토지수용이 됩니까?
 시설계획국장 토지소유에 의하면 수용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자연녹지지역에 연구시설을 건립키위한 것입니다.
 위 원 장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누가아서 설명했습니까?
 시설계획국장 총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위 원 장 제안사유중 '86, '88 올림픽을 대비키 위해 큰 연구시설이 필요
 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적은것 같으나 새마을운동을 연구 훈련키위한
 시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일 등 동의 (가결)

제21안 도시계획시설 (시장)결정

가

0 강동구 명일동 347-3외 1필지

가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3차 위원회 본 회의)

구분	1차회의 2차장	가로계획 1차장	시설계획 2차장	시설계획 1차장	시설계획 과장	구분
서명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1차회의 → 2차장
2차회의 → 1차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회 의 참 석 상 황

- 0 일 시 : '85. 9. 6 15:00 - 17:00
- 0 장 소 : 소회의실
- 0 참 석 : 도시계획위원 22명중 17명 참석
- 0 안 건 : 올림픽대교 및 관련시설 결정등 33개안 67건
- 0 참석위원 : 위원장

노 용 희	위원	이 광 노	위원
안 영 백	"	신 동 호	"
안 범 수	"	김 경 동	"
지 용 원	"	이 동 백	"
도 철 용	"	여 흥 구	"
장 지 남	"	김 계 량	"
최 종 무	"	정 영 십	"
이 동	"	김 인 식	"
간 사	"	서 기	"

0 불참위원

김 수 근	위원	백 상 승	위원
오 휘 영	"	장 현 익	"
황 명 찬	"		

0 기탁참석

시설계획과장, 제기발과장, 상임기획단 이증재외 6인

가로계획1계장, 가로계획2계장

서울시 교육위원회 재무과 교지 조성계장

제14안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0 도봉구 공릉동 72번지 일대	가 결
제15안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0 관악구 봉천동 산67-32일대	"
제16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0 강서구 신정동 산109-1일대 (추가지정)	"
제17안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결정 0 은평구 신사동 98-17외 3필지 (폐지)	"
제18안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0 강서구 내발산동 18-11일대	소위원회의의결
제19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 0 강서구 신정동 915-2외 1필지	가 결
제20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도로) 결정 0 강서구 신월동 331-1일대(공용의 청사) 0 강서구 신월동 346-2-331(도로신설)	" "
제21안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0 강서구 명일동 347-3외 1필지	소위원회의의결
제22안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0 동작구 대방동 71-1일대	조건부가결
제23안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 0 강남구 대치동 937외 2필지	가 결

회 의 진 행 상 황

간 사 성원보고

위원장 지금부터 '85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간 사 '85.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 및 제3차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안건

현황보고(회의록 및 심의안에 의함)

안건별로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장, 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

- | | |
|--|--------|
| 0 강동구 풍납동388-이동 340(도로, 100m신설) | 소위원회의임 |
| 0 강동구 풍납동 —성동구 구의동(교량730m신설) | " |
| 0 강동구 풍납동470-풍납동330(도로300m신설) | " |
| 0 성동구 구의동498-강변1로(도로200m까지) | " |
| 0 강동구 풍납동 469일대(공장 79,830m ² 신설) | " |
| 0 성동구 광장동 495일대(공장50,000m ² 신설) | " |
| 0 강동구 풍납동 355-31(학교 11,200m ² 까지) | " |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공람공고 기간중에 대교남측 접속도로 폭원축소, 풍납중학교 방향으로

노선10m이동, 성내천 복개 또는 재방이용 및 풍납 토성구간 지하도

또는 육교로 통과토록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풍납토성 관계로 노선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요

특정날 의견 영신교회가 학교용지 기준에 맞는 학교시설부지를 확보하려고
 매입한 2,151m²를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 학교는 이 모지를
 추가한다해도 학교 기준 면적에 미달하고 있으며

아직 졸업생이 없어 2학년까지만 있는 신생학교지요

노응혁 위원 임상은 어떻습니까?

시설계획과장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일 동 동의 (가결)

제17안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

0 은평구 신사동 98-17외 3필지(폐지)

가 결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77년도에 운동장으로 시설결정 하였으나 '79년부터 501지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용지이며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했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일 동 동의 (가결)

제18안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결정

0 강서구 내발산동 18-11 일대

소위원회의위임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김경동 위원 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근처입니까?

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동 위원 어디서 시설결정 요청이 있었습니까?

시설계획과장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요청입니다.

위원장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검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일 동 동의 (가결)

비상 24464-600

293

85. 10. 14.

수신 시설계획과장

제목 비상 안전구역내 건축협의를 대한 회신

기	AG	국방부	시설계획과	공
영인				제
				람

1. 관련근거.

가. 시설 30314-347 (85.7.2) 도시계획 (연구시설) 결정 요청 보완.

나. 비상 24464-328 (85.7.13) 비상 안전구역내 (Ⅱ) 건축가능 협의.

다. 국방부 작계 24464-2070 (85.10.7) 위 제목.

2. 의 근거 "가"로 협의한 강서구 내발산동 18-11 의 2필지상 새마을 운동 중앙
 본부내 올림픽 훈련관 건립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협의한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동의 되었기
 통보 하오니 건축허가서 조건이행여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약 태

가.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18 - 11 의 2필지.

나. 건축 내용

· 문화 연구관 : 지하 1층, 지상 7층 15,044m²

· 교육 훈련관 : 지상 5층 6,512m²

부대조건.

· 건축물 위치및 고도변경 금지.

· 건축물 완공시까지 행정관서 관공관 배치.

· 건축물 건립지역의 지표면 해발고도를 13.55 - 12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하고, 지표면의 해발고도가 상이 또는 변동및 건축된 위치 변경시 재협의 함것 함.

위 안 대 조 필



국가안전기획부

총시 920- 2356

962-6808

19 85. 7 . 29 .

수 신 : 서울특별시청

참 조 :

제 목 : 도시계획(연구시설) 검토협의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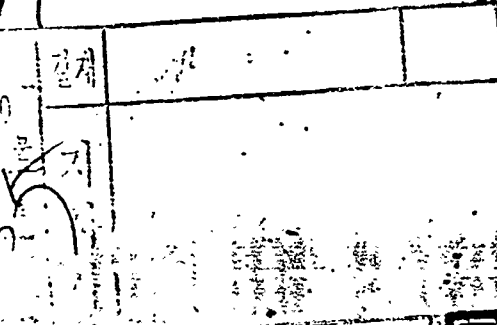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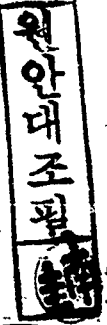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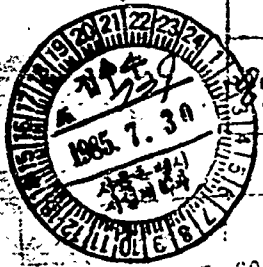
1. 시설 30374-347 (85. 7. 2) 과 관련의 도시계획 (연구시설)

검정요청 협의안은 아래 제한조건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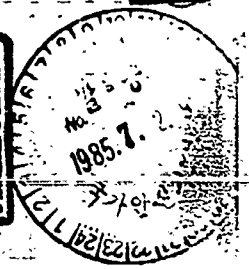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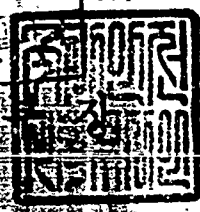
가. 제한조건내용

단부기저 이전 이후에 건축을 하는 조건으로 동의. 끝.

계	가공계획 2계장	카르테획 1계장	시설계획 2계장	시설계획 1계장	시설계장 과장	도시계획 국장	공
			추가		32	32	



1985년 7월 30일
처리할것
국가안전기획부



시 설 부 편 기

도시 30115- *PLP*

417

85. 8. 13.

수신 시설계획과장
제부 업무협의회의

구	시	지	시	지	부	과	장
							공
							재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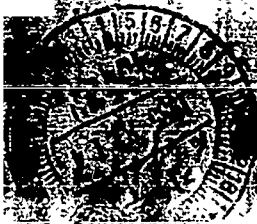
1. 시설 30314 - 262 (85. 7. 26) 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 수도권경비 계획법령 운용 협의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회신합니다.

새마을 읍립된 문화관 신축 계획은 국무총리 지시 제12호(수도권
내 공공경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 계획)에 의해 당해기관의 업무성격이 수도
권경비 계획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경신문화) 시설
에 해당하여 수도권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임.

따라서 새마을 읍립된 문화관이 문화(경신문화) 시설에 해당한다
함은 건축법상 일반업무 시설로서의 용도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중 문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시설을 사용할 기관(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업무성격에 따른 것이므로 당해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또한 수도권경비 심의위원회 의견내용보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가할 경우에는 제심의를 받아야함(수도125-20122-84. 70. 31) 함.

위
의
대
조
필



사 을 목 별 시

건지 30420 - 7.46 766
 수신 시설계획과장
 제목 도시계획 (연구시설) 결정 요청 보안 통보

85. 7. 8

1. 시설 30314-347 (85.7.2)호의 관련임.
2. 위호로 당과에 건축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안 요청한 건은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아 래

가. 협의 지역은 생산녹지지역, 공항고도지구, 보존지구, 안전기획부 협의구역 및 군사보호구역인바, 공항 고도지구의 건축통제는 건물 최고높이는 해발 63m이하로 하여야 하며, 건축시 사전 안전기획부, 국방부등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함. 끝.

제	가로계획 2제장	가로계획 1제장	시설계획 2제장	시설계획 1제장	시설계획 과장	공 림
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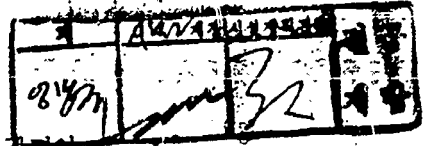
시지 30314-444

209

'85. 7. 10.

수신 시설계획과장

제목 도시계획 (연구시설) 결정요청 보완 회신.



- 1. 시설 30314-347 (85. 7. 2)호와 관련하여
- 2. 본건 도시계획 (연구시설) 결정 요청 보완 요구에 따라 내용을 검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새마을 올림픽 문화관 신축의 필요성

○ '86,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민족

올림픽 추진 중앙협의회가 '85. 3. 2. 창립됨을 계기로 민간주도에 의한 올림픽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그러나 국민에게 올림픽 개최의의를 소개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방문의국인에게 새마을운동과 국가발전상을 소개할 문화시설이 없는 실정임.

○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 새마을 올림픽 문화관을 건립하여 올림픽의 역사와 내용은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전시, 소개하고 시민의식을 양양시키기 위한 회의장, 교육장, 시청각실로 활용, 국민의 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새마을운동추진과정과 국가발전상을 전시함으로써 올림픽 개최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참여를 촉진코자 함. 끝.

의안대조필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official.



서울특별시

농축 30314-425

421

85. 7. 4

수신: 시설기획과장

제목: 도시계획(연구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

1. 시설 30314-347(85.7.2)호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의 전용 협의는 농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협의 서류 구비(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출 구청장의 심사후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농축과장)이 처리(농지의 면적및 구분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케 되어 있으며

2. 강서구 도시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도 "농지전용 협의를 요함"으로 의견을 제시한바 농지전용 협의 일건 서류를 강서구청장에게 제출바랍니다. 끝.



지방수기작 **농축과장**

